

2022학년도 편입학 시행계획

본 <2022학년도 편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수록된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모집요강>을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덕여자대학교

1. 지원자격

- 전적대학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우리대학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및 전적대학에서 징계사유로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일반, 농어촌학생, 기회균등, 특성화고교,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재외국민과외국인 등, 학사편입 등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각 모집단위 간에도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4학년 편입학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학적조회결과 전적대학의 학칙에서 규정한 2학년(4학기) 수료학점을 최종 이수하지 못하여 합격 후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전적대학 수료요건의 충족여부를 필히 확인 후 지원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편입

지원자격	비고
① 국내 . 외 정규 4년제 대학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전적대학의 2학년 수료기준 학점을 이수(예정)한 자	- 계절학기는 수료학기 수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수(예정)학점에 포함
② 국내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외국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③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 및 학점취득(예정)자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사학위과정으로서 7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전문학사 학위이상 취득(예정)자	- 학위취득요건은 갖추었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불가능 - 소정의 학점은 취득(예정)했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불가능
④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4년제 대학)를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전적 각종학교의 2학년 수료기준 학점은 이수(예정)한 자	

※ '수료'라 함은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함

※ '예정'이라 함은 2022년 2월 해당 요건 취득 예정을 의미함

2) 농어촌지역 학생 편입

(1)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2)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자

① 6년 요건(중 1학년 ~ 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부모거주 포함)

② 12년 요건(초·중·고 전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부모거주 무관)

※ 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의 인정은 지원자의 중학교 1학년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함(행정구역명 변경의 경우 포함)

3) 기회균등(기초생활수급자 등) 편입

- (1)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시 기회균등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 (2)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기회균등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대상자 및 그 가구의 학생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그 가구의 학생

4) 특성화고교 편입

- (1)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을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시 특성화고교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 (2)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을 있는 자로서, 본교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 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고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특성화고교 출신 학과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동일계열임을 본교가 인정한 자(종합고등학교 중 동일계 인정학과 출신자도 지원 가능)
 - 동일계열 특성화고교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
 - 본교가 제시한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특성화고교 기준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의 경우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동일계열 확인서'[소정양식3]를 작성하여 원서접수 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동일계열 확인서' 제출대상자는 본교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동일계열 인정 여부를 결정함

5)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편입

- (1)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있는 자로서 자로서, 대학 신입학 시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특별전형(정원외)으로 입학한 자
- (2)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있는 자로서, 본교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1)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

구분	내용
마이스터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종합)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직업교육훈련과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보통과 <7차 일반 등>'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고등학교 졸업 후 아래의 산업체 범위 내에서 입학일 기준 통산 3년(1,095일) 이상 (예정자 포함) 근무(영업)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근무(영업)중인 자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 ③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자영업자 포함)
- ※ 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3) 아래의 근무(영업)기간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 ①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근무(영업)기간이 통산 3년(1,095일) 이상(예정자 포함)이어야 함
 - ※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역산하며, 합격하고 등록한 자가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통산 근무(영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 근무(영업)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 ※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 등 비영업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 ② 원서접수 마감일 및 2022년 3월 1일 모두 근무(영업)중이어야 함
 - ※ 합격하고 등록한 자가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휴직(휴업)중일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③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근무(영업)한 경우 합산하여 통산 3년(1,09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④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산업체에서 근무(영업)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편입

구분	지원자격
재외국민과 외국인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북한이탈주민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시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전교육과정 이수자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시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입학한 자 - 일반 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교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재외국민과외국인,북한이탈주민,전교육과정 이수자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격

(1)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구분		자격요건
외국영주 재외국민	교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로서 <u>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u>
외국근무 재외국민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u>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u>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아래와 같은 해외 근무 상사직원 및 주재원의 자녀로서 <u>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u>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u>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u>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하는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u>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u>
기타 재외국민	현지법인,자영업, 유학, 연수, 파견, 출장, 해외취업, 선교활동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현지법인 근무, 자영업, 유학, 연수, 파견, 출장, 해외취업, 선교활동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의 자녀로서 <u>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u>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해외고교과정 2년 이상 이수 외국인	외국 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복수국적자 제외)

※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의 기준

- 1)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2년 이상을 계속하여 재학 또는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과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재학
- 2)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비연속 재학)에는 외국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1년 이상 포함하여 외국 중·고등학교에서 통산 3년 이상 재학

(2) 북한이탈주민

구분	자격요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자

(3) 전교육과정 이수자

구분	자격요건
전교육과정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외국인의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예체능계열 2급 인정) 이상 자격 취득자(단, 대학 졸업 시까지 4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7) 학사편입

지원자격	비고
① 국내 . 외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방송통신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②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위취득요건은 갖추었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불가능
③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예정'이라 함은 2022년 2월 해당 요건 취득 예정을 의미함

2. 모집 인원

- 아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추후 정원내/외 여석을 산정하여 확정 모집요강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일반	농어촌학생	기회균등	특성화고교	특성화고등고졸재직자	재외국민 과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학사
인문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과								
		국사학과								
		영어과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사회과학대학	인문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문헌정보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야)								
자연과학대학	자연	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								
		응용화학전공								
		화장품학전공								
			토탈뷰티케어학과(야)							
	예체능	체육학과								
정보과학대학	자연	컴퓨터학과								
		정보통계학과								
예술대학	예체능	회화과								
		디지털공예과								
		큐레이터학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디자인대학	예체능	패션디자인학과								
		시각&실내디자인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야)								
공연예술대학	예체능	방송연예과								
		실용음악과								
		무용과								
		모델과								
		방송연예과(야)								
총계										

3. 주요 전형일정(예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21년 12월
전형일	2022년 1월
최소합격자 발표	2022년 2월
총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2년 2월

4.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1) 일반 편입

인문·자연계열학과 (문예창작과 제외 큐레이터학과 포함)	국사학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예체능계열학과 (문예창작과 포함 큐레이터학과 제외)
공인영어(100%)	공인영어(100%)+가산점(10%)	실기(100%)

2) 농어촌학생 편입

인문·자연계열학과 (문예창작과 제외 큐레이터학과 포함)	국사학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예체능계열학과 (문예창작과 포함 큐레이터학과 제외)
공인영어(100%)	공인영어(100%)+가산점(10%)	실기(100%)

3) 기회균등(기초생활수급자 등) 편입

인문·자연계열학과 (문예창작과 제외 큐레이터학과 포함)	국사학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예체능계열학과 (문예창작과 포함 큐레이터학과 제외)
공인영어(100%)	공인영어(100%)+가산점(10%)	실기(100%)

4) 특성화고교 편입

인문·자연계열학과 (문예창작과 제외 큐레이터학과 포함)	국사학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예체능계열학과 (문예창작과 포함 큐레이터학과 제외)
공인영어(100%)	공인영어(100%)+가산점(10%)	실기(100%)

5)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 편입

구분	세무회계학과(야), 토탈뷰티케어학과(야)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면접(40%)+전적교성적(60%)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편입(재외국민과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과정이수자)

인문·자연계열학과 (문예창작과 제외 큐레이터학과 포함)	국사학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예체능계열학과 (문예창작과 포함 큐레이터학과 제외)
공인영어(100%)	공인영어(100%)+가산점(10%)	실기(100%)

7) 학사 편입

인문·자연계열학과 (문예창작과 제외 큐레이터학과 포함)	국사학과, 일본어과, 중어중국학과	예체능계열학과 (문예창작과 포함 큐레이터학과 제외)
공인영어(100%)	공인영어(100%)	실기(100%)

5. 부정방지 대책 등

- 1) 입학원서의 '지원동기' 등에는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이익 조치한다.
- 2) 편입학 부정, 채점 착오 등의 방지를 위해 합격자 발표 전에 최종 점검하여 편입학 부정 및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편입학 이후 입시부정 사실 확인 시 반드시 "편입학 취소 및 학적말소" 조치한다.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입시부정의 경우라도 취소될 수 있다.
- 4) 입학전형에 있어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